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5퍼센트”를 “3퍼센트”로 한다.

제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전문개인투자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자산을 운용한 경력
이 5년 이상일 것

나.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제9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게 된 경우
로서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교환·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호가목 중 “(벤처투자조합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호나목 중 “(벤처투자조합과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 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 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 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삭 제>
1. 사업내용에 창업자나 벤처기 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 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	<삭 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 는 회사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 ----- -----.
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 퍼센트 이상일 것	1. ----- 3 퍼센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가.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게 된 경우로서 그 주식

3. 개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자산을 운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나.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게 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
우

나.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
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이전하거나 합병하
는 경우로서 주식의 교환
· 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
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
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
내인 경우

2. (생략)

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
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
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
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이전하거나 합병하
는 경우로서 주식의 교환
· 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
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
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
내인 경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주식등
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
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
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
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현행과 같음)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2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벤처투자조합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벤처투자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벤처투자

조합이 주식의 교환·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u>벤처투자조합과</u>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 (생략)	조합이 주식의 교환·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u>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u>과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 (현행과 같음)
--	--